##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(서영교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8641

발의연월일: 2021. 3. 8.

발 의 자:서영교·양정숙·오영훈

임호선 · 강민정 · 김영배

이해식 · 오영환 · 박 정

박상혁 • 박홍근 • 한병도

임오경 의원(13인)

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국가유공자등이 보철용·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 중 먼저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하고 있으나, 해당 과세특례가 2021년 12월 31일자로 종료될 예정임.

국가유공자등이 보철용·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자동차에 대한 현행의 과세특례가 종료될 경우, 국가유공자등의 경제적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음.

이에 국가유공자등이 보철용·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한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4년까지 연장함으로써 국가유공자의 자활능력 향상하고 권익을 보호하며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(안 제29조제4항).

법률 제 호

##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9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"2021년 12월 31일"을 "2024년 12월 31일"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## 신·구조문대비표

| 현 행                          | 개 정 안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|
| 제29조(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감           | 제29조(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감   |
| 면) ① ~ ③ (생 략)               | 면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    |
| ④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             | 4                    |
|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국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|
| 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|
| 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|
| 람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|
| 정하는 사람(이하 "국가유공자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|
| 등"이라 한다)이 보철용·생업활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|
| 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|
| 득하는(대통령령으로 정하는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|
| 바에 따라 대체취득하는 경우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|
| 를 포함한다) 다음 각 호의 어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|
| 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로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|
| 서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 중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|
| 어느 하나의 세목(稅目)에 대하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|
| 여 먼저 감면 신청하는 1대에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|
|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자동차세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|
| 를 각각 <u>2021년 12월 31일</u> 까지 | <u>2024년 12월 31일</u> |
| 면제한다. 다만, 제17조에 따른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|
|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|
| 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.               | ,                    |
| 1. ~ 4. (생 략)                | 1. ~ 4. (현행과 같음)     |

⑤ (생 략)

⑤ (현행과 같음)